

의안번호	2207736
의 퇴 인	주철현 의원
회 답 일	2025.02.10.
추 계 번호	25G0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3년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2026년 5,023억원, 2029년 6,637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3조 4,616억원(연평균 8,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6~2028년 총 63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 예상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3년 연장 시 증여세는 2026~2028년 총 1,962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 예상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년 연장 시 법인세는 2027~2029년 총 1조 1,217억원(연평균 3,739억원) 감소 예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6~2028년 총 157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 예상
 - 조합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6~2029년 총 1,521억원(연평균 380억원) 감소 예상
 -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6~2029년 총 1조 7,235억원(연평균 4,309억원) 감소 예상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는 2026~2028년 총 2,315억원(연평균 772억원) 감소 예상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교육세는 2026~2028년 총 51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 예상
 -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는 2026~2028년 총 95억원(연평균 32억원) 감소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	-63	-2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1조제1항)	-654	-654	-654	-	-1,962	-65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2조)	-	-3,620	-3,738	-3,859	-11,217	-3,7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	-157	-52
조합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8조의5)	-282	-507	-507	-225	-1,521	-380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2,553	-17,235	-4,309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6호)	-772	-772	-772	-	-2,315	-77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제1항 후단, 제111조제1항제2호)	-17	-17	-17	-	-51	-17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32	-32	-32	-	-95	-32
합계	-5,023	-11,420	-11,537	-6,637	-34,616	-8,654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와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1조제1항(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3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4	안 제87조의2(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현행) 농어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개정안) 농어민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5	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2026년부터 저율과세*) * 2026년 5%, 2027년 이후 9%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2029년부터 저율과세*) * 2029년 5%, 2030년 이후 9%	
6	안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2026년부터 저율과세*) * 2026년 5%, 2027년 이후 9%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2029년부터 저율과세*) * 2029년 5%, 2030년 이후 9%	
7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6호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안 제111조제1항(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면제대상 세목) 부가가치세(제106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제111조제1항제2호)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3년 연장)	
9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제9호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2	안 제71조제1항(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
3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
4	안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5	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
6	안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
7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6호	○	-
8	안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안 제111조제1항(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
9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제9호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토지 양도일이 포함된 해당연도에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21억원)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3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향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증여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
 -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
 -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

-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

※ 단, 2023년 조합법인의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

-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20~'24년)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의 경우, 2024년의 동 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4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

마.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의 경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출자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의 경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에서 어업용 기자재 분을 별도로 분리해 추계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의 경우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 중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중을 산출하여 반영

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연장된 일몰기한을 고려하여 2026~2028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종료(2027.12.31.)에 따른 유류세 개별소비세 전환 후에도 석유류에 대한 세율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의 부가세인 교육세 감소분까지 추계

자.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최근 조세지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개요)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연도별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17~2024년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	신설	19	19	19	17	24	25	20	21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21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

(3) 추계결과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1억원, 2028년 21억원 등 3년간 총 63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시 세수효과: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63	-21

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100%)

[표 4] 영농자녀등의 증여세 감면 요건

구분	내용
증여인 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
수증인 요건	•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감면대상 자산	• 농지: 「농지법」 상 농지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등: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누적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적용기간: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2019년 596억원에서 2023년 654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5] 최근 5년간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액
감면실적	596	536	773	712	654	6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654억원, 2028년 65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1,962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최근 5년(2019~2023년) 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6]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654	654	654	1,962	654

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

-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9~12%의 저율과세 적용

[표 7]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

		일반법인	조합법인
적용대상		일반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손금불산입(기부금 등 8개항목 ¹⁾) = 과세표준
과표 구간별 세율	2억원 이하	9% ²⁾	9%
	2~20억원	19% ²⁾	
	20~200억원		12%
	200~3,000억원	21% ²⁾	
	3,000억원 초과	24% ²⁾	

주: 1)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대손충당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2)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p씩 상향된 세율 적용

□ (특례실적)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3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 3,289억원 수준

-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

[표 8]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법인세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과세특례 실적	3,271	3,347	4,230	5,113	3,289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 2020~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 효과 추정

-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9]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 2023년 신고기준

과표구간별	법인수 (개)	과세표준 (억원)	과세특례 적용		과세특례 미적용		세수효과 (A-B)
			세율 (%)	산출세액 (A, 억원)	세율 ¹⁾ (%)	산출세액 (B, 억원)	
합 계	4,215	59,145	-	6,053	-	11,167	-5,113
2억원 이하	1,181	618	9	56	10	62	-6
2~20억원	2,273	19,307		1,740	20	3,407	-1,666
20~200억원	753	37,307	12	4,032		7,311	-3,279
200~3,000억원	8	1,913		225	22	387	-162

주: 1)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 실적을 조정
 -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 2023년 신고기준

과표구간별	법인수 (A,개)	과세표준 (B,억원)	1인당 과세표준 (C=B/A, 억원)	특례 미적용시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		
				세율 (D,%)	산출세액		세율 (D',%)	산출세액	
					1인당 (E=C ×D, 억원)	전체 (F=E ×B, 억원)		1인당 (E'=C ×D', 억원)	전체 (F'=E' ×B, 억원)
합 계	4,215	59,145	-	-	-	11,167	-	-	10,577
2억원 이하	1,181	618	0.5	10	0.05	62	9	0.04	56
2~20억원	2,273	19,307	8.5	20	1.6	3,407	19	1.5	3,215
20~200억원	753	37,307	49.5		10.5	7,311		10.0	6,938
200~3,000억원	8	1,913	239.1	22	55.0	387	21	52.3	368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 2023년 기준 11.5%의 실적이 하향 조정

[표 11]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 2023년 신고기준

(단위: 억원, %)

	특례적용시 산출세액(A)	특례 미적용시				실적조정을 ([C-E]/C)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		
		산출세액(B)	특례실적 (C=A-B)	산출세액(D)	특례실적 (E=A-D)	
산출세액	6,053	11,167	-5,113	10,577	-4,524	-11.5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기준으로 2020~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특례 실적은 연평균 3.2% 증가함

[표 12]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잠정)	연평균 증가율 ('20~'24년)
특례 실적	조정전(A)	3,271	3,347	4,230	5,113	3,289	-
	조정후 (A×[1-11.5%])	2,894	2,961	3,743	4,524	3,289 ¹⁾	3.2

주: 1)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 (3.2%)을 반영하여 추계

[표 13]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세수효과	-3,620	-3,738	-3,859

(3) 추계결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3,620억원, 2029년 3,85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1,217억원 (연평균 3,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9년, 법인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72조)	-3,620	-3,738	-3,859	-11,217	-3,739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7억원, 2023년 43억원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2021~2024년 연평균 24.2%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임·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만기 3년 또는 5년)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

[표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¹⁾	연평균 ²⁾
조세감면액	40	35	37	43	67	46
(증감률)	(△24.5)	(△12.5)	(5.7)	(16.2)	(55.8)	(24.2)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1~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4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

-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4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2024.10.)의 전망치 활용

[표 16]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고채 3년물	3.6	3.1	2.8	2.8	2.7	2.6
(증감률)	-	(△12.4%)	(△9.3%)	(△2.1%)	(△1.8%)	(△3.3%)

자료: 2023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3) 추계 결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53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157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157	-52

마.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은 2020~2024년 연평균 634억원 수준이며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

[표 18]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¹⁾	연평균 ²⁾
조세감면액	492	491	611	868	709	789
(증감률)	(△37.2)	(△0.2)	(24.4)	(42.1)	(△18.3)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3~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2023~2024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789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표 19]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

(단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 2023년~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789억원/14%)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282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1,521억원(연평균 3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0]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9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안 제88조의5)	-282	-507	-507	-225	-1,521	-380

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647억원으로 2021~2024년간 연평균 52.7% 증가

[표 21]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관련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¹⁾	연평균 ²⁾
조세감면액	4,372	3,269	3,113	6,226	11,647	8,937
(증감률)	(△13.9)	(△25.2)	(△4.8)	(100.0)	(87.1)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2~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2023~2024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8,937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표 22]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

(단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 2023년~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937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 (8,937억원/14%)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3,192억원 등 2026~2029년 동안 총 1조 7,235억원(연평균 4,30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2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2,553	-17,235	-4,309

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23년 2조 3,047억원 수준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

[표 24]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액: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18,770	17,763	18,481	21,886	23,047

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공급가액 중에서,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중은 2023년 3.3% 수준

[표 25]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중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의 비중: 2019~2023년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분	24.8	26.0	28.2	34.6	34.6
어업용 기자재 분	1.1	1.1	1.2	1.3	1.2
전체 대비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중	4.2	4.0	4.2	3.6	3.3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9년 794억원, 2023년 772억원 등 2019~2023년 5년간 평균 772억원 수준으로 추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따른 전체(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조세지출액에,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 중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추정함

[표 26]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액 추정: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794	715	784	794	772	772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772억원 등 2026~2028년 3년 간 총 2,315억원(연평균 77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최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제도에 대한 조세지출의 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최근의 평균 조세지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6~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729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586억원 감소 예상

[표 27]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6호)	-772	-772	-772	-2,315	-772
- 국세(74.7%)	-576	-576	-576	-1,729	-576
- 지방소비세(25.3%)	-195	-195	-195	-586	-195

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0~2024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2024
년은 전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
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2024년 전망은 신고·진도비를 고려한 수치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표 2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합계	연평균
합 계	18	19	14	15	17	83	17
부가가치세	3	4	5	5	6	23	5
교통·에너지·환경세	13	13	8	9	10	53	11
교육세	2	2	1	1	1	7	1

자료: 2022~2025 조세지출예산서(정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억원 등 2026~2028년
까지 3년간 총 51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9]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제1항 후단, 제111조제1항제2호)	-17	-17	-17	-51	-17
부가가치세	-5	-5	-5	-15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33	-11
교육세	-1	-1	-1	-3	-1

자.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19년 36억원, 2022년 46억원, 2024년(전망) 2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 최근(2019~2024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32억원 수준

[표 30]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19~2024년(전망)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연평균
조세지출액	36	21	34	46	24	29	32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2028년 3년 간 총 95억원(연평균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2019~2024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32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26~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71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24억원 감소 예상

[표 31]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32	-32	-32	-95	-32
- 국세(74.7%)	-24	-24	-24	-71	-24
- 지방소비세(25.3%)	-8	-8	-8	-24	-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박성은	
	신흥철	
	김효경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박정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
신흥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